

# 신규 사업자가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과점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세금 문제이다.  
이에 제과점이 내야할 부가가치세 세금의 신고 요령과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부가가치세란?

물건을 팔 때 이미 부가된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1년간 자신의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예상해 사업자 등록 신청서의 과세 적용 신고란에 어떤 과세 방법을 적용 받을지 기재해야 원하는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1억 5,000만원 이상인 자
-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미만인 자
- 과세특례자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

## 기장의 의무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하며 매입·매출장 등의 기장 의무가 있음.
- 간이과세자 : 영수증을 발행함. 매입·매출장 등 기장의 의무가 있음.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음.
- 과세특례자 : 영수증을 발행하고 주고 받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만 보관하면 기장하는 것으로 봄.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못함.

## 신고 납부

### ● 일반과세자

1년에 4번 신고 납부한다. 즉 2번은 예정 신고 납부, 2번은 확정 신고 납부함.

- ☞ 예정 신고 납부 ·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의 실적을 4월 1일에서 25일까지 신고 납부  
· 7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의 실적을 10월 1일에서 25일까지 신고 납부
- ☞ 확정 신고 납부 ·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7월 1일에서 25일까지 신고 납부  
·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다음해 1월 1일에서 25일까지 신고 납부

### ●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1년에 4번 납부한다. 그러나 다른점은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가 2번은 직접 확정신고 납부하고, 2번은 세무서에서 예정 신고서를 발부하면 납세자는 예정신고서에 기재된 금액을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만일 신고 납부 기간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 ☞ 신고 납부 절차 · 제1기 :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7월 1일~25일까지 신고 납부  
· 제2기 : 7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다음해 1월 1일 ~25일까지 신고 납부  
※예정신고는 2번은 4월과 10월에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함.

## 신고 서류

### ● 일반과세자

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2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영세율 첩부 서류 (해당자만), 대손세액 공제서(해당자만)

●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신고서 2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 세금 계산서, 영세율 첨부 서류(해당자만)

**납부 세액 산출 방법**

- 일반과세자 : 매출액 × 10% - 매입액 × 10%
- 간이과세자 : 매출액 × 10% × 22%(제과점의 부가가치 공제율) - 재료 등 매입액 × 10% × 20%(재료 등 매입 세금계산서 제출시 공제)
- 과세특례자 : 매출액 × 2% - 재료 등 매입액 × 10% × 10%(재료 등 매입 세금계산서 제출시 공제)

따라서 이를 근거로 납부 세액을 계산해 보자.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1년에 4번 신고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편의상 1년치 매출액을 근거로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는지 모델을 제시한다.

● 일반과세자

어떤 일반 과세 사업자가 1년에 6,800만원어치의 재료를 구입해 제품을 만들어 1억 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을 때 1년간 내는 세금 → (1억 5,000만원 × 10%) - (6,800만원 × 10%) = 820만원  
따라서 1년에 4번 세금을 내게 되므로 한번에 평균 205만원을 내게 된다.

● 간이과세자

어떤 간이과세자가 1년에 4,500만원의 재료를 구입해 제품을 만들어 1억원의 매출을 올렸을 때 1년간 내는 세금 → (1억원 × 10% × 22%) - (4,500만원 × 10% × 20%) = 130만원  
따라서 1년에 4번 세금을 내게 되므로 한번에 평균 32만원을 내게 된다.

● 과세특례자

어떤 사업자가 1년에 2,160만원어치의 재료를 구입해 제품을 만들어 4,800만원의 매출을 올렸을 때 1년간 내는 세금 → (4,800만원 × 2%) - (2,160만원 × 10% × 10%) = 75만원  
따라서 1년에 세금을 4번의 세금을 내게 되므로 한번에 평균 18만원을 내게 된다.

**세금을 적게 내는 법**

●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가 신고 납부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은 재료 등 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 계산에서 재료 등 매입액 계산서를 제출해 공제받을 수 있는 액수가 공제되지 않아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일례로 앞의 간이과세자 세금액 계산에서 13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재료 등 매입 세금 계산서를 신고 납부시 제출하지 않으면 (4,500만원 × 10% × 20%)의 90만원을 공제받지 못해 매출 세액(1억원 × 10% × 22%)인 220만원을 내야 하므로 결국 90만원이 손해다.

또 과세특례자도 앞의 계산에서 75만원을 내게 되는데 신고 납부때 재료 등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계산서를 내지 않으면 21만원을 공제받지 못해 96만원을 내야 하므로 결국 21만원이 손해다.

● 앞의 사업자별 세금 계산에서는 3가지 사업자 모두 세금이 많게 계산됐다. 이런 계산은 세법에 정해진 대로 원칙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신고 납부때 제과점이 매출 계산서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지만 제과점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매출계산서나 영수증을 주고 받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신고 납부때 기재해야 할 매출액은 이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실제 내야 할 세금은 앞서의 계산보다 훨씬 적다. 반면 매입 세금계산서는 철저하게 받아 놓았다가 세금 신고 납부때 세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하고 세무서에도 제출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